

퇴직연금 정기예금(DB, DC/IRP)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당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이 적용되며 해당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수신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수금약관”을 적용됩니다. 해당 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에 따라 예탁받는 상품입니다.

1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퇴직연금 정기예금(DB, DC/IRP)은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취급대상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
계약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가입금액	- 최저 : 1원 이상 / 최대 : 제한없음
지급제한	- 계좌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있을 경우 원리금 지급 제한 -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양수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 불가

□ 일반중도해지이율

- 만기일 전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중도해지금리**는 납입기간 경과율에 따라 중도해지이율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금리 = 약정금리 X 중도해지이율 비중*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되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0.1% 미만 시 0.1% 적용
 • 납입기간 경과율 = 예치일수 ÷ 약정일수

* 중도해지이율 비중

납입기간 경과율	중도해지이율비중
20% 미만	10%
20% 이상 40% 미만	20%
40% 이상 60% 미만	40%
60% 이상 80% 미만	60%
80% 이상 100% 미만	80%

2 이자 산정 및 지급

□ 금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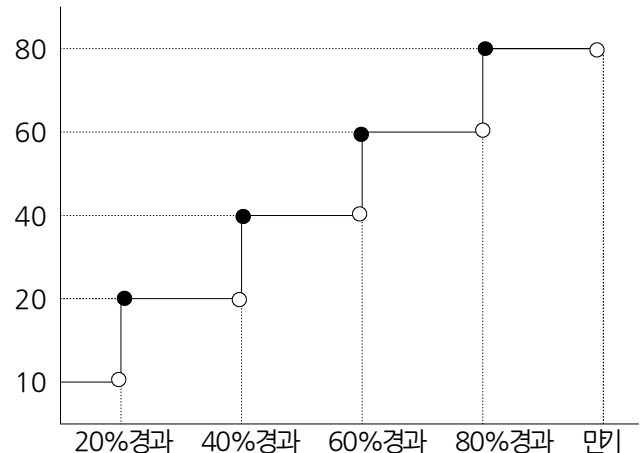
적용금리	가입(재예치) 당일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이자지급	만기 시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지급

□ 이자 산정 방식

이자수령액 = 원금 X 약정금리 X 예치일수 ÷ 365 (원미만 절사)

※ 중도해지시의 이자계산은 아래 항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이율비중(%)



■ 본 상품설명서는 2023년 4월 19일 이후 적용되는 상품설명서입니다.

□ 특별중도해지이율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또는 출금)하는 경우 예치일 당시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일(재예치일) 당시의 약정이율 적용합니다.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연금의 특별중도해지사유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4.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전환 및 급여이전(계약이전)
5.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6.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의 지급
7.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질병,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 및 가입자의 해외이주(개인형IRP에 한함)

- 약정기간 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치일(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약정이율

1. 약정기간 12개월 이하 : 약정기간 별 약정이율
2. 약정기간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 12개월제 약정이율
3. 약정기간 24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 경과기간 24개월 미만 : 12개월제 약정이율
 - 경과기간 24개월 이상 : 24개월제 약정이율

□ 분할해지

- 만기해지 포함 3회 이내 가능(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분할해지하는 경우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 만기 후 적용금리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 만기처리방법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B) :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1. 재예치이율 : 재예치일 현재 고시된 이율 적용
2. 재예치금액 :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 금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단,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재예치하며, 재예치시 다음의 기준 적용

1. 재예치이율 : 재예치일 현재 고시된 이율 적용
2. 재예치금액 :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 금액
3. 재예치기간 : 당초 계약기간과 동일)



3 계약의 해지 및 위법계약해지권

- 계약의 해지 : 이 예금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일괄 해지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4

예금자 보호 여부

해당 	확정 기여형 (DC)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개인형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비해당 	확정 기여형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설명서는 당사 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 및 수신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수금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유의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거래나 정보에 대하여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 상품은 한국증권금융 자본시장금융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 계약서류(약관, 상품설명서 등)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금리 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본 상품은 예치기간 및 예치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양수도,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 시마다 별도의 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6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 상품 가입 후 고객의 피해 발생 또는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44-8333)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sfc.co.kr)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2023년 4월 19일 이후 적용되는 상품설명서입니다.